

「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5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6월 10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담당관)

가. 제안이유

- 근거 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, 주민자치회의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 법령 폐지 · 제정에 따른 현행화(안 제1조, 제5조, 제18조, 제21조)
- 의제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행위 근거 마련(안 제8조)
- 역량강화사업 구체화(안 제2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1부.

「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일부개정조례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평창군수
- 제안일자 : 2025. 5. 30.
- 회부일자 : 2025. 6. 9.
- 상정일자 : 2024. 6. 10.

2. 제안이유

- 근거 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, 주민자치회의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인용 법령 폐지 · 제정에 따른 현행화(안 제1조, 제5조, 제18조, 제21조)
- 의제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행위 근거 마련(안 제8조)
- 역량강화사업 구체화(안 제22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에서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이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, 주민자치회의 권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조, 제5조, 제18조, 제21조에서 상위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였음.
- 안 제8조(권한)에서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 계획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험·홍보 부스, 어린이놀이기구·시설 등을 설치

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이 시설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부행위의 근거를 마련함.

- 안 제22조(자치단체의 지원)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외에 워크숍,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현행화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권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“자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
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5. 31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근거 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, 주민자치회의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 법령 폐지·제정에 따른 현행화: 안 제1조, 제5조, 제18조, 제21조

(기준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
(개정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의제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행위 근거 마련: 안 제8조

(신설) 제2항: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또는 자치계획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험·홍보 부스, 어린이놀이기구·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(신설) 제3항: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체험·홍보 부스는 관내 기관·단체의 비영리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, 어린이놀이기구

- 시설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다. 역량강화사업 구체화 등: 안 제22조

(기준)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(개정) 군수는 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, 워크숍, 선진지 견학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타 :

- 1) 입법예고(2025. 4. 14. ~ 2025. 5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평창군 공고 제2025-600호, 행정담당관-9493(2025. 4. 14.)호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6488(2025. 4. 23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6488(2025. 4. 23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5066(2025. 4. 16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7194(2025. 5. 9.)호]
- 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7931(2025. 5. 26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”로, “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·면”을 삭제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.)” 제28조”를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4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공직선거법 제19조”를 “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1조제1항 제3호”를 “제21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또는 자치계획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험·홍보 부스, 어린이놀이기구·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체험·홍보 부스는 관내 기관·단체의 비영리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, 어린이놀이기구·시설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8조 중 “특별법 제29조제2항”을 “특별법 제4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“특별법 제29조제2항”을 각각 “특별법 제

4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주민”을 “분과위원회 구성원”으로, “교육”을 “교육, 워크숍, 선진지 견학”으로, “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·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.)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5조(기능) ----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40조제3항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<u>제21조제1항 제</u> <u>3호의</u>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 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제21조제1항제3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권한) (생 략)</p>	<p>제8조(권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또는 자치 계획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험 · 홍보 부스, 어린이놀이기 구 ·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체험 · 홍보 부스는 관내 기관 · 단체의 비영리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, 어린이놀이기 구 · 시설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</p>
<p>제18조(정치적 중립) 주민자치회 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</p>	<p>제18조(정치적 중립) ----- ----- 특별법 제40조제5항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제21조(위원의 해촉)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 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선거운동을 하거나,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

4.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
5. ·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2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

· ② (생략)

③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제21조(위원의 해촉) ① -----

-----.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특별법 제40조 제5항-----

4. 특별법 제40조제5항-----

5. ·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분과위원회 구성원----- 교육,
워크숍, 선진지 견학 -----
-- 수립 · 시행할 수 있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 발 췌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“자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
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은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의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김두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